

고충처리위원회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를 보장하고 한편 모성을 보호하고 업무능력을 개발하여 직원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설치 및 명칭) 이 규정의 설치 명칭은 고충처리위원회(이하 '고충처리위원회'라 한다.)라 하고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대학 내에 설치한다.

제3조(신의성실의 의무) 직원과 대학의 대표자는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고충처리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.

제4조(폐지) 폐지는 당 대학의 폐교,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시 및 기타 특별한 사유 발생 시 상호합의에 의한다.

제5조(고충처리위원의 구성) ①대학은 직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에서 학교위원 4인, 직원위원 4인을 둔다.

②학교위원은 총장이 위촉하고 직원위원은 직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, 비밀, 무기명 투표에 의해 다수를 득표한 직원위원 순으로 선임한다.

제6조(고충처리위원의 임기) ①위원의 임기는 선임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

②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.

③위원의 임기는 협의회 최초 구성시는 선임된 날로부터 계산하고 후임위원은 임기 만료일 익일부터 계산한다.

④후임위원은 전임위원의 임기만료일 14일 전까지 선임하여야 한다.

⑤보궐 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7조(보궐위원) ①직원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5조에 의하여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선임한다.

②학교위원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제6조에 의하여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.

③보궐위원은 노사협의회 규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선출한다.

제8조(위원장) ①고충처리 위원회에는 1인의 위원장을 두며 위원장은 직원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②위원장을 호선할 경우 학교위원과 직원위원의 고충처리위원 전원이 동의하여야 한다.

제9조(고충처리위원의 임무) ①고충처리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

1. 직원의 고충청취 및 접수
2. 고충내용에 따라 해결방안 강구 및 결과 통보

제10조(고충처리 절차) ①직원이 고충사항이 있을 때에는 고충처리위원회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하고 신고된 사항은 고충처리위원회의 협의로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.
②고충처리위원회는 직원으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조치사항 또는 기타 처리결과를 당해 직원에게 알려주고 이해시켜야 한다.
③고충처리위원회가 처리할 수 없는 직원의 고충사항과 중요사항은 차기 또는 임시 협의회에 회부하여야 한다.

제11조(고충처리장소, 시간 및 위원의 명시) ①대학은 고충처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고충처리민원실을 설치·운영한다.
②고충처리는 가능한 한 위원의 사무실을 활용하되 휴식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제12조(고충처리위원의 신분 및 처우) ①고충처리위원은 비상임 무보수로 한다.
②고충처리위원의 협의 및 조사 등 고충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은 이를 근무한 것으로 본다.
③고충처리위원은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.
④고충처리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알게 된 비밀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3조(고충사항의 조정 신청)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고충사항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근로자 또는 사업주는 관할 노동관서의장에게 고충 해결을 위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.

1. 직원여성을 채용함에 있어 남성과 차별을 두었을 때
2. 동일한 가치업무에 대하여 남성과 차별을 두었을 때
3. 임금 외의 금품에 있어서 남녀차별을 두었을 때
4. 혼인, 임신, 출산 등 여성인 것을 이유로 교육, 승진, 배치에 있어 남성과 차별을 두었을 때
5. 정년과 해고에 있어 남성과 차별을 두었을 때
6.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여성근로자에게 고용상 불이익을 주었을 때
7. 직원여성의 육아휴직으로 인해 불리한 처우를 하였을 때

제14조(고충처리 절차의 활용) 직원은 개인의 고충해결을 위하여 대학 내·외의 진정을 지양하고 고충처리절차에 따라 본인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대학은 고충사항을 해결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.

제15조(대장비치) 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사항의 접수 및 그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·비치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본 규정은 1999년 12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주무부서) 고충처리위원의 운영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대학 인사책임자가 관장한다.

제3조(규정제정) 본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의로 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.